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책 종합정보지입니다.

2022년
4월호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KIBO 기술보증기금 |  KDIT 신용보증기금 |  (재)경남테크노파크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yeongnam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
|  경남신용보증재단 Gyeong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창원상공회의소 |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RIPC 경남지식재산센터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GyeongNam Economic Promotion Agency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  창원산업진흥원 Changwon Industry Promotion Agency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본 자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 차

1. 중소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
|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 1 |
| ② 소상공인 희망대출 용자 접수 | 3 |
| ③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용자 | 4 |
|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5 |
| 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현장형 R&D) | 6 |
| ⑥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 | 7 |
| ⑦ 코로나 19 관련기업 관계자 입국 격리면제 지원 | 10 |
| ⑧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 | 12 |
| ⑨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13 |
| 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13 |

2.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 |
|-----------------------------|----|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 14 |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16 |
| ③ 고용유지지원금 | 17 |
| 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19 |
| 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20 |
| ⑥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21 |
| ⑦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 22 |
| ⑧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3 |
| ⑨ 고령자고용지원금 | 24 |

3.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 | |
|----------------------|----|
| ① 구조혁신 지원사업 | 25 |
|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26 |
| ③ 내일채움공제 | 27 |
| ④ 기업인력 애로센터 | 28 |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 |
|---------------------------------|----|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 29 |
| ② 경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 | 30 |
| ③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30 |

목 차

5.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 ① '22 년 상반기 기술이전 공동마케팅 32
- ② 기술혁신형 M&A 특례보증 33
- ③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34

6.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 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35

7. (재)경남테크노파크

- ①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채용장려금 지원) 36
- ②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인력양성 지원) 37
- ③ 경남 연구개발 장비공동 활용지원사업 38

8.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① 2022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39
-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40
- ③ 202 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41

9. 경남신용보증재단

- ①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보증 42
- ②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43
- ③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44
- ④ 경상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보증 45
- 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46

10.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①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47
- ②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원 48
- ③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관련 무역보험 우대지원 49

목 차

| | |
|--|----|
| ④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 50 |
| 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 51 |
| ⑥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제도 운영 | 52 |
| ⑦ 온라인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제도 운영 | 53 |
| ⑧ 온라인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다이렉트 플러스제도 운영 | 54 |
| ⑨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제도 운영 | 55 |

11. 경남지식재산센터

| | |
|----------------------------|----|
| ①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56 |
|----------------------------|----|

12.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 |
|--------------------------------------|----|
|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 57 |
| ② e 경남몰 운영 | 58 |
| ③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 59 |
| ④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 | 60 |
| ⑤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 61 |
| ⑥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 | 62 |

13.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 |
|--|----|
| ①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63 |
| ② 2022년 셋별(G-Rising Star)기업 육성사업 | 64 |
| ③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 | 65 |

14. 창원산업진흥원

| | |
|---|----|
| ① 2022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말레이시아) 지원사업 모집공고 | 66 |
| ② 2022년 인도네시아(자동차, 기계, 전자) 무역사절단 모집공고 | 67 |
| ③ 2022년 신흥해외전략시장 기술교류협력사업 모집공고 | 68 |
| ④ 2022년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모집공고 | 69 |

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1 손실보상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기업규모**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애로 극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 집중 필요
-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법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및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7월 7일 ~ 2021년 12월 31일

- '21년 3분기분 손실보상,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부칙)

□ **방역조치**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4분기만 해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4

□ **손실발생** : 경영상 심각한 손실

-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영업 손실 발생

2 손실보상 산식 및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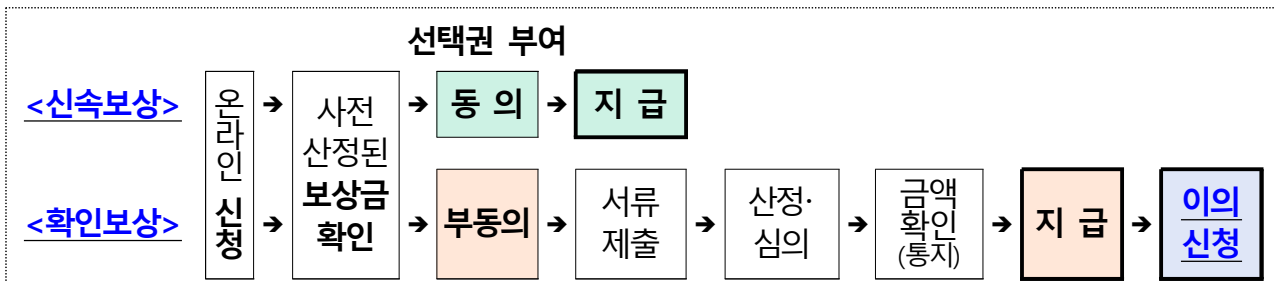
1. 산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산식(안) >

| | | | | |
|--|---|--------------|---|-----|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 |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 |

2. 신청 및 지급절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지급



3 문의 및 안내

- (세부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 (전화 문의) “[☎1533-3300](tel:1533-3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114.kr”
 - 상담원 : 평일 09 ~ 18시 운영
 - 챗봇상담 : 24시간 운영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 “[☎055-285-6530](tel:055-285-6530)” (평일 09 ~ 18시 운영)

2 | 소상공인 희망대출 용자 접수

□ **(사업목적)**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 지원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 저신용 ③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용자'(21.11.29 ~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 특례보증 및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업종은 동사업과 같지 않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이 아닌경우

□ **(용자조건)** 용자규모 : 1.4조원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접수기간)** 2022. 1. 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문의·상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3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용자

- **(사업목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용자 지원
 -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용자 확대 지원
- **(지원대상)** 2021.7.7.부터 2021.10.31.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①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②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 ('20.8. 이전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 ('20.9.~'21.5.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용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10만 업체 x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021. 11. 2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문의·상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신청자격)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공통적으로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하나, 시장대응형/소부장일반-재도약과제는 업력 7년 이상,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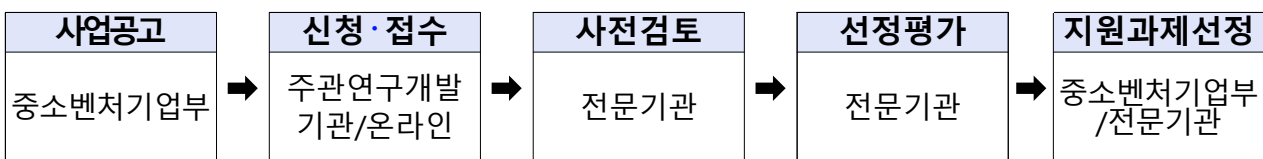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 최대 4년, 20억원 (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 80% 이내 | 자유공모(품목지정) |
|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 최대 2년, 6억원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 | |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최대 2년, 5억원 (연차별 최대 2.5억원 이내) | | |

□ (지원규모)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신규과제)

□ (선정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한) 2022. 1. 17.(월) ~ 4. 25.(월)

* 세부사업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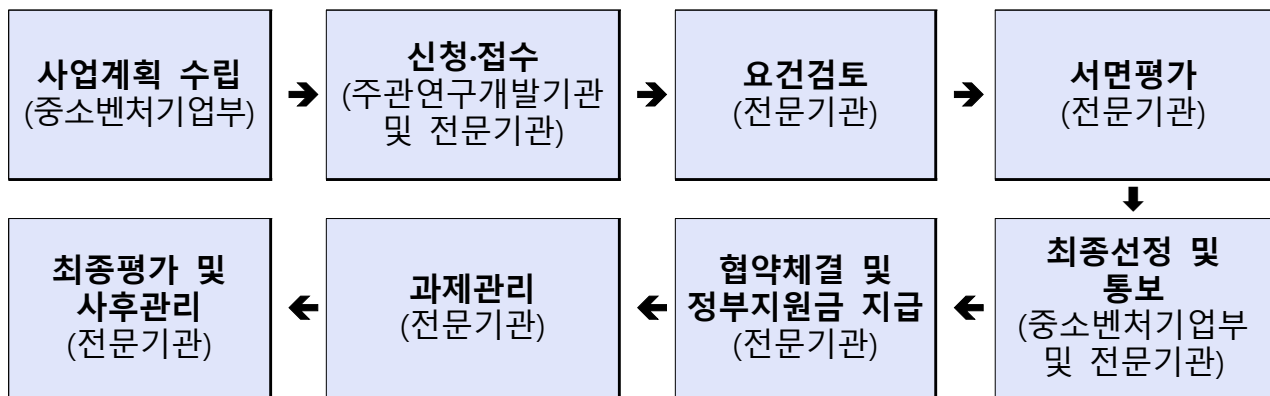
□ (문의처) (국번없이) 135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55-268-2551)

5 | 공정 · 품질 기술개발사업 (현장형 R&D)

- (사업개요)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지원방식 |
|------|--------|-------------|--------------|------|
| | 현장형R&D |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지원규모) 3,875백만원, 155개 과제 지원(신규과제)
- (평가절차)



- (신청기한) 2022. 3. 22.(화) ~ 4. 13.(수) 18시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국번없이) 135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55-268-2551)

6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

□ 적용대상

- (국가)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16개 국가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 총 16개국 | |
|----------------|---------------------------------------|
| 아시아 (7개국) |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쿠웨이트, 타이완, 홍콩 |
| 미주 (3개국) | 그레나다, 파나마, 페루 |
| 오세아니아 (6개국) |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통가 |

- (대상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
 -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불가

□ 준비서류 및 기간

- ① (준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신청 엑셀 양식, ③ 초청외국인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④ 초청장 또는 항공권
- ② (신청기간) 입국 10일전 신청(토, 일, 공휴일 불포함)

□ 신청

- 경남지방중기청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담당자 메일 접수)
 - ※ 신청양식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gyeongnam)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기업인 우선입국 대상(K-ETA) 운영 안내
 -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055-268-2545 / seunghhee0816@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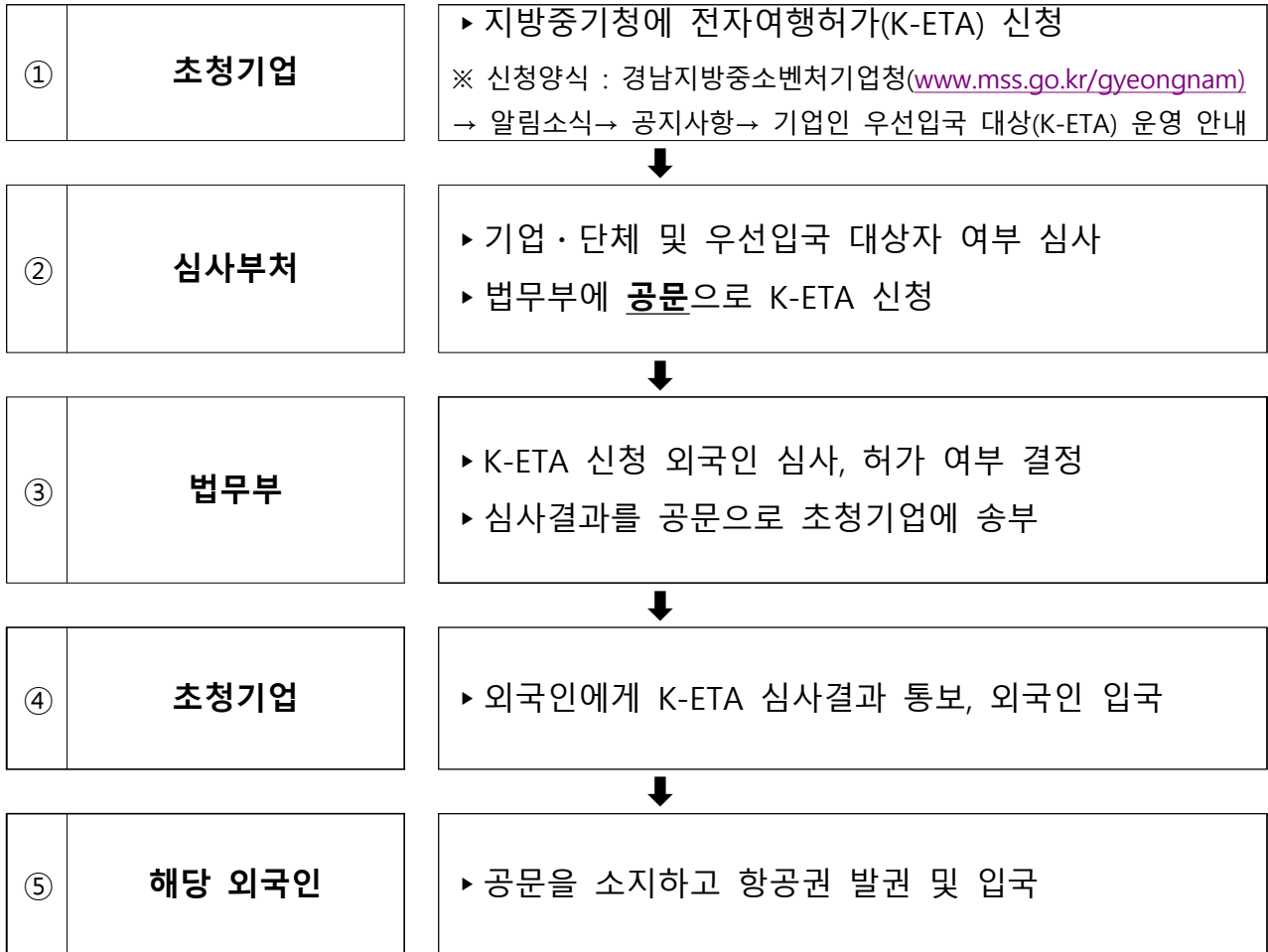
[Tip] 기업인 격리면제는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신청
법무부 최종심사에서 K-ETA 발급이 불승인 될 수 있음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필수)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불필요

참고1

K-ETA 신청 흐름도

1 신청 및 허가 절차



2 심사부처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중기부(그외 중소기업)

□ (문의처 및 접수처) 055-268-2545 / seunghee0816@korea.kr

참고 2

K-ETA 직접신청 가능 국가 (96개국, '22년 4월1일부터)

- 하단의 직접 K-ETA 신청이 가능한 96개 국가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를 이용

* 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K-ETA 신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카타르, 태국, 터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나우르, 미셜제도, 피지, 투발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지원

- **(사업개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 조건 구분

| 구분 |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
| 대상 | ① 미접종자 ②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수시변경) *4월 1일 기준 3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①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3.21~) ②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4.1~) |
| 조건 | 발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 |
| 신청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www.btsc.or.kr → (좌측) 격리면제 신청 온라인 접수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등록 (필수사항) -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없이 격리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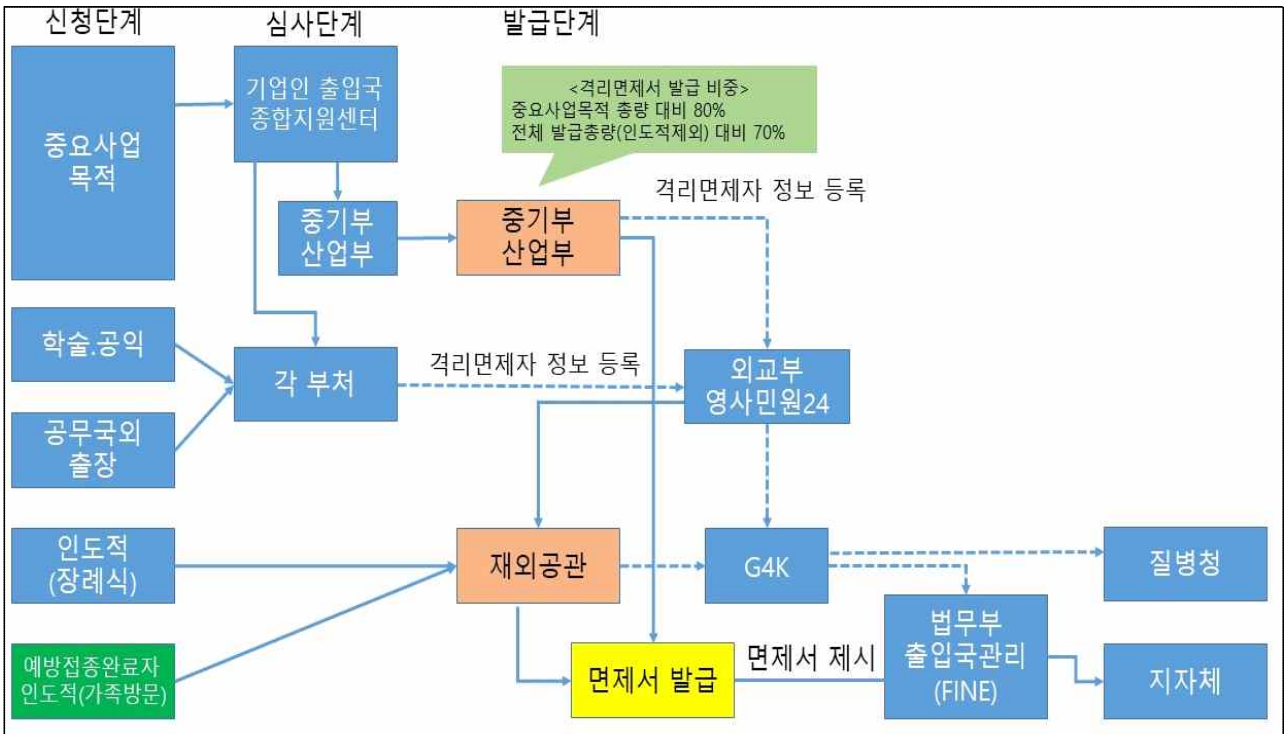
□ 격리면제서 신청자격 변경사항(3.21~)

-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발급대상 (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필수
- 계약 및 약정체결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수)
-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기술지도 및 이전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업무(증빙서류 제출 필수)

□ (발급절차)



□ (신청시점)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국내입국 예정일로부터 2주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발급 후 1회 사용 및 재사용불가)
-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신청방법)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좌측) 격리면제 신청]
 - * 온라인 신청전 신청서식 미리보기(참고용) : www.btsc.or.kr → (좌측) 공지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개편안내(하단에 참고자료 신청서식 참고)
- 학술·공익적 목적의 경우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직접신청 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 존·비속 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 단,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 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문의처) 1566-8110, 055-268-2545

8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

- **(사업개요)**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창업·벤처전문가, 마케팅·수출입 전문가 등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상시 상담·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자문서비스”

- **(지원대상)**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 장애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지원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분야별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기술애로를 무료상담 지원
 - 현장클리닉 :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해결 지원

- **(지원조건)**
 -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 35만원(정부 80% 지원, 기업부담 20%)
 - * 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부담금 면제
 - * 현장클리닉 자문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환급 가능)

- **(신청·접수)**
 - 전화 : 국번없이 1357, (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055-268-2546~8
 -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 방문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1층 고객지원실 내)

9 |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지원내용)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수시 상담 및 접수
 -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유선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기관 등)로 규제개선 요구
- (신청방법) 전화(055-268-2523), 전자우편(k2jo24@korea.kr) 등

10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지원내용)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상담 및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률자문 지원, 시정권고·명령 등

| 절 차 | 내 용 |
|-------------------------------------|--|
|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피해기업 → 신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유선, 우편, 신고센터 방문 접수 등 ■ (온라인)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smes.go.kr/poll) |
| ↓ | |
| 신고사실 검토 (신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법 위반사실 검토 |
| ↓ | |
|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 (신고센터 → 위탁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유선확인(불공정 행위여부 확인 및 당사자 간 중재) ■ (2차) 위탁기업 현장방문 조사(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구확인 등) <p>※ (법률자문 필요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변호사와 상담 연결</p> |
| ↓ | |
| 수위탁 분쟁조정 (이해당사자 → 신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8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수위탁기업에서 요청 시 |
| ↓ | |
| 시정권고·명령 (신고센터 → 위탁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권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 |

- (신청방법) 전화(055-268-2561), 전자우편(forever@korea.kr), 온라인 신고(<https://smes.go.kr/poll>) 등

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1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2년도 주요 변경내용 >

- ① 기업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른 기업부담금 변경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매월 2.5만원),
50~199인: 50%(매월 6.25만원), **200인 이상**: 100%(매월 12.5만원)
- ② 5인 미만 병·의원 종사자 가입 허용
- ③ 기업 귀책 중도해지의 경우 재가입 기간 완화
(현행) 6개월 이내 취업→ **(개정) 12개월 이내 취업**
- ④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중도해지사 환급금 조정
(현행)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환급금 지급→ **(개정) 중도해지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 동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조기 예산소진 등으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가입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①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34세의 청년** ② 고용보험 최초 취득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 **(참여제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초과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자,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등

- **(기업)** 해당 청년 정규직 취업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참여제한)**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법인·단체, 외국법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주 등

□ **(가입 및 취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 계약취소는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기업 또는 청년이 신청

□ **(지원방식)**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 적립
 - * 기업의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있음

❖ **(기업 부담금)**

| | |
|----------------------------|--------------------------|
| 30인 미만 기업: 면제 | 30~49인 기업: 20%(매월 2.5만원) |
| 50~199인 기업: 50%(매월 6.25만원) | 200인 이상: 100%(매월 12.5만원) |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2년간 5회)

⇒ 중소기업 등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원 마련

□ **(공제부금 적립)**

- (청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300만원** 적립
 - * 청년 본인 계좌에서 **매월 12.5만원**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 적립(가상계좌에 적립)

| 적립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 지원(적립)금 | 8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2년간 **300만원**) 적립(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규모 (피보험자수) | 자부담율 (기업자부담금/적립방식)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 30인 미만 | 면제(0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 30인~49인 | 20%(60만, 월 2.5만)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 50인~199인 | 50%(150만, 월 6.25만) | 37.5만원 | 37.5만원 | 37.5만원 | 37.5만원 |
| 200인 이상 | 100%(300만, 월 12.5만) | 0원 | 0원 | 0원 | 0원 |

□ **(지원절차)** ❶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기업→청년) ⇒ ❷ 약정체결 및 선발처리(운영기관) ⇒ 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청년·기업)·승인

□ (문의처)

| 운영기관명 | 소재지 | 전화 |
|--------------------|-----------------------|--------------|
| (사)경남경영자총협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6 | 055-263-0282 |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055-295-2360 |
|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3층 | 055-261-3264 |
| 창원상공회의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 055-210-3091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사업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장 적응능력·직무향상을 지원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 제고하는 프로그램

□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신청 직전 월말 기준)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일부 사유에 해당 시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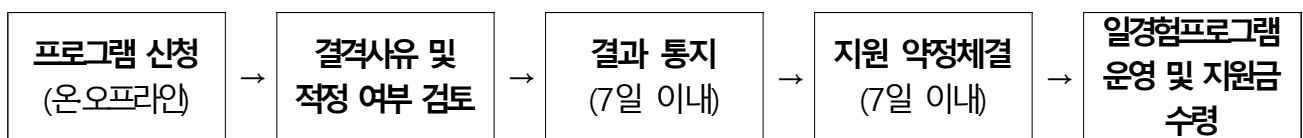
- (기업별) 벤처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업종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 (지원내용)

| 유형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모집한도* |
|-----|--|--|--------|
| 체험형 | · 최대 30일(사업장 휴무일 제외) · 1일 3~4시간(1주 20시간)이내 원칙 | · 1인당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 40% 이하 |
| 인턴형 | · 1개월~3개월 · 1일 8시간(1주30~40시간) 준수 | ·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914,440원 · 1인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 40% 이하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전 월말 기준) 기준

□ (참여절차)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온라인 신청,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39-5372)
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59-1575)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①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 ②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① 무급휴업 : ① 30일 이상 실시, ②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③ 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 ① 30일 이상 실시, ②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③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④ 근로자대표 합의

*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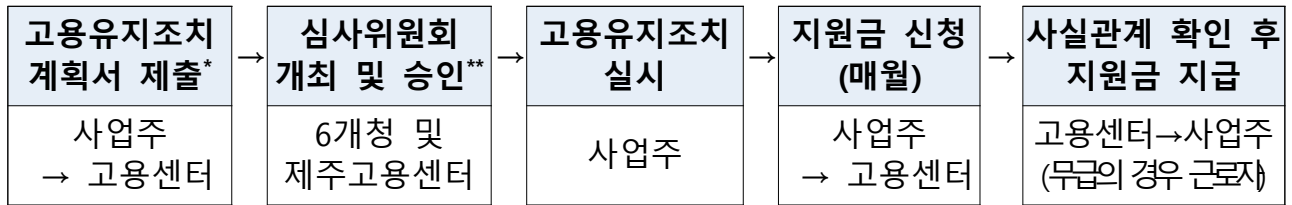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내용)

| 구분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 업종 |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관광업 `20.3.16~`22.3.31, 공연업 `21.4.1.~`22.3.31, 항공기취급업 `20.4.27~`22.3.31.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단, 집합제한금지업종은 30일 이내 신고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 (지원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된 경우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 ②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 ③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자
 - ④ 계획 신고 당시 해고 예고된 자 및 퇴직 예정자
 - 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동거친족
- 당해 사업장 입사(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세부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시행공고\(Click\)](#)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진해구)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신청 및 승인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30명(수도권: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청, 2~4차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단위로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①'20.12월~'21.12월 중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②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③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5인 이상(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단,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 월 임금 당해연도 최저임금('20년-1,795,310원, '21년-1,822,48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초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 기준 직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매월 말일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예시> '18년 성립 사업장에서 '20.12월(A), '21.1월(B), '21.2월(C)에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A에 대해 최초 지원받게 되면, B,C도 19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증가 여부 판단

*** 단, 전년도 연평균 인원 5인 미만 사업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

- ① 연평균('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인 경우**
- ②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이더라도,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 ③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이더라도, '21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 <예산범위 내>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지원대상 중도 퇴사 시 대체 불가
- (신청기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6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개요)**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22.1.1.시행)

☞ (개정사항 적용) '22.1.1.이후의 지원 대상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대상 기간이 '21.7.1~'22.6.30.인 경우 '21.7.1~'21.12.31.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22.1월분부터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조건)** 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②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③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3일 이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및 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록

- **(지원수준)**

| 지원내용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원 한도 | 지원대상 |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 360만원 |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시에만 지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지원
- **(지원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10인 미만 3명)
※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시스템(<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세부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시행공고\(Click\)](#)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유연근무제* 활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 |
|--------------|--|
|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④ 출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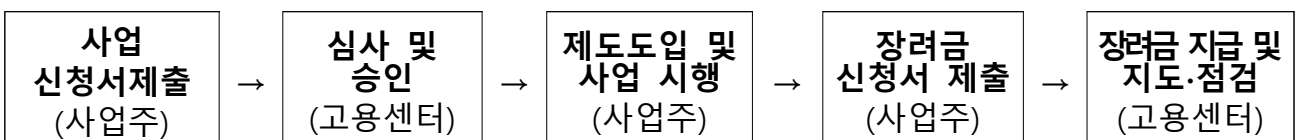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최대 360만원

| 유형 | 1개월 지급액 | | 최대 지급한도 |
|----------|-------------|-------------|---------|
| | 월 6일~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 |
| 선택근무제 | 30만원 | | 360만원 |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지원

- **(지원절차)** <공모형>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 고용 촉진 및 고용연장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시행 중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①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 (재고용)
 - 재고용의 경우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
- (지원수준)**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10인 이하 사업장 3명)
- (지원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시스템(<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사업체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신규 채용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 대상 고령자의 수 × 30만원” 을 지원금 최초 지급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최대 한도 30명)
 -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지원제외)**
 - 사업적용기간인 1년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및 최저임금 미만인 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 구조혁신 지원사업

□ 세부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노동·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중진공 구조혁신 홈페이지(3t.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2022. 2. 16.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진단 800개사, 사업·노동·디지털전환 컨설팅 1,100개사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구조혁신 유형별(사업·노동·디지털전환)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컨설팅 수행,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0~3개 분야)
 - **(컨설팅)** 사업·노동·디지털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법인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 구분 | 분야별 세부내용 |
|--------------|--|
| 사업전환 | ■ 기업역량 및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혁신 등 |
| 노동전환 고용안정 |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
| 디지털전환 | ■ 디지털화 수준 및 내부역량 강화,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

| 구분 | 연계지원 세부내용 |
|----------------------|--|
| 사업전환 추진기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융자 ■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R&D, 스마트공장, 공공입찰 등) |
| 노동전환 고용안정 추진기업 | ■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 디지털전환 추진기업 | ■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청년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군복무기간 추가인정, 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월 최소 20만원)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월 최소 12만원)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기업혜택)**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세제지원, 우대가점 등 적용
 - (손비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제지원) 기업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 25%)
 - (우대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시 우대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업·신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588-6259)

3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부동산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은 재직자(가입인원 한도 및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적립방식)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자:기업=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5년간 납부
- (기업혜택)**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세제지원, 우대가점 등 적용
 - (손비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제지원) 기업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 25%)
 - (우대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시 우대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업·신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내일채움공제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588-6259)

4

기업인력애로센터

- (사업개요)** 구인구직, 직무역량 향상, 맞춤형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인력제도 개선, 정보제공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에 등록된 구인기업의 인력매칭, 제도개선,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을 제공하는 ONE-STOP 지원체계
 - **(청년구인구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시 매칭
 - **(직무역량향상)** 중소기업연수원, 고용부 HRD-Net 등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교육기관과 연계
 - **(맞춤인력양성)**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
 - **(근무환경개선)** 기업진단,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근무환경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인력제도개선)** 법규, 제도 등 규제사항을 기업인력지원처를 통해 대정부건의
 - **(정보제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지원 시책 연계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899-3001)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사업개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지원대상)

○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희망대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 NICE신용평점 744점 이하

○ (일상회복특별융자) 인원·시설운영 제한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조치기간 : '21.7.7.~'22.10.31, 개업일 : '21.10.31 이전

(지원규모) 희망대출 1.4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 한도 | 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
| 희망대출 | 1천만원 | 1%(고정) |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 |
| 일상회복특별융자 | 2천만원 | 1%(고정) |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 |

(신청기한)

○ (희망대출) ~ 예산 소진 시까지

○ (일상회복특별융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온라인 신청

(세부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Click\)](#)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

경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율 제고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30명
- (지원내용)** 창업교육 및 사업화지원 자금 지원
 - (교육과정) 창업교육(4주, 160시간 내외)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12주 내외)
 - (지원내용)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점포 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1억원 신청, 지원)
 - * 사업화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15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 사업화 자금은 3천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50% 자기부담(예비창업자)
- (신청기한)** 2022. 3. 21.(월) ~ 4. 8.(금)(예정)
 - * 지역별 모집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참조
 - * 모집공고 3. 21 이후 공지 예정
 - * 지역별 모집상황에 따라 모집기간 및 세부내용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운영지원팀(051-463-0212)

3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으로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으로 재기 도모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분야에 따른 세부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규모) 39,400건 (단, 지원분야에 따라 모집인원 상이함)

(지원내용)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① 경영개선사업화 | • 경영위기 소상공인 |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 ② 재창업사업화 | • 폐업 소상공인 |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
| ③ 원스톱폐업지원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 ④ 재도전역량강화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최대 1백만원) 지급 |

○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신청기한) 2022. 1. 1.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세부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공고\)](#)

(문의처) 1357(중소기업지원통합콜센터) 또는 각 지역 센터

5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1

'22년 상반기 기술이전 공동마케팅 시행

(목적)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기술보유기관) 대학교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2개

(이전대상기술) 10여개 기술분야 특허 1,973건(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 158건 포함)

*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https://tb.kibo.or.kr>) '특가기술이전'에서 기술정보 확인 가능

(기술이전방식) 매매(양수)

(기술거래가액) 기관별·특허별로 상이 (2.2백만원~7.7백만원, VAT 포함)

| 거래가액 (천원) | ₩2,200 | ₩3,300 | ₩3,850 | ₩4,400 | ₩5,500 | ₩6,600 | ₩7,700 | 합 계 |
|-----------|--------|--------|--------|--------|--------|--------|--------|-------|
| 특허개수 (건) | 8 | 438 | 8 | 28 | 1255 | 94 | 141 | 1,972 |

(이전절차비용) 권리이전수수료(전체) 및 특허 미납 연차료(일부) 발생

(권리이전 수수료) 특허권의 권리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변리사 비용(등록료, 대리인 수수료 등)으로, 양수인(기업)이 부담

(특허 미납 연차료) 특허권 유지 비용으로, 특허 양도일(계약일 기준)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한 건은 양도인(대학·공공연)이 납부

(중개 수수료) 기술거래가액의 15%(전 기관 동일), 양도인(대학·공공연) 부담

(마케팅 기간) 2022. 2. 23.(수) ~ 5. 31.(화)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 및 영업점

2 | 기술혁신형 M&A 특례보증

- **(목적)**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보증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촉진
- **(대상기업)**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인수기업(기업인수·합병 완료 후 3개월 이내 포함)으로서 기보의 '기술혁신형 M&A보증 체크리스트*'를 충족한 인수기업
 - *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M&A자금지원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구성
 - 피인수·피합병기업의 기보의 보증금지·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
 - 인수·합병기업과 피인수·합병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
- **(대상채무)**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 **(자금용도)** 운전자금 취급이 원칙
 - * 단, 인수·합병 계약서상 기재된 부동산 인수자산에 대해 인수기업으로 소유권 이전이 명시된 경우 시설자금으로 취급 가능
- **(최고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기보보증금액 포함)
- **(가치평가)** 소요자금 산정을 위한 피인수기업의 주식가치평가 또는 자산가치평가 실시
- **(우대사항)** 95% 부분보증,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 **(시행일자)** 2022. 3. 2.(수)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 및 영업점

3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 **(목적)**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지속 시 피해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품의 유동성 공급 필요
- **(지원대상)**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입 규제,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배제 등 금융제재에 따른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 **직접 피해 중소기업**
 - 최근 1년 이내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입 실적 보유중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현지법인 설립 등 진출내역을 보유한 국내 직접 피해 중소기업
 - 러시아 주요 은행의 특별 제재대상자(SDN) 지정에 따른 SWIFT 배제로 결제대금 지연 및 미회수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기타 간접 피해 중소기업**
 - 직접 피해기업과 연관된 간접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수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 0.3%p 감면 및 중복감면 적용 확대
 - **(운전자금 산정특례)** 기보증 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3억원이하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생략(기타 간접피해기업은 적용 제외)
 - **(운전자금 한도우대)**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한도를 추정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로 우대 적용
- **(시행일)** 2022. 3. 15.(화)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 및 영업점

1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사업개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
- (대상기업)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① (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수출통제 조치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 ② (수출기업) '21.1.1.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 ③ (수입기업) '21.1.1. 이후 분쟁지역에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 ④ (기타 피해기업) ①·②·③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 중개무역 영위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국내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보증비율 : 관련 기준 불구하고 95% 적용
- 보증료율 : 신용도별 산출 보증료에서 0.3%p 차감

- (문의처) 인근 영업점(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 1588-6565)

1 |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채용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친환경 LNG선박 시장 확대에 따른 LNG선박 생산설계 양성 인력의 채용기업 지원으로 조선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경남지역 조선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교육수료생 80명 내외
- (지원내용)
 - LNG선박 생산설계수료생 채용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년
 -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협력 기술지원사업의 수료생 채용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년
- (선정절차)

신청 접수

⇒

사전 검토

⇒

선정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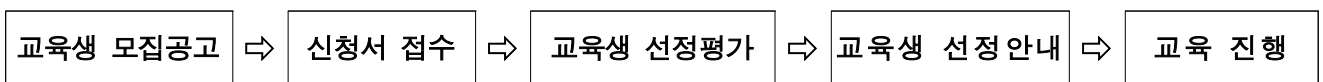
선정기업 협약체결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2022년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LNG선박 생산설계 수료생 채용기업 모집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055-670-6627)

2 |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인력양성 지원)

- (사업개요) 친환경 LNG선박 시장 확대에 따른 LNG선박 관련 설계 핵심인력 양성
- (지원대상) 조선업 퇴직자, 미취업자, 청년 구직자(거주지역 상관없음)
- (지원규모) 연 160명 내외
-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 지원(수강료, 교재비, 중식 제공)
- (교육내용 및 세부일정)

| 과정명 | 교육장소 | 교육일정(예정) | 교육 시간 | 모집 인원 | 교육 지역 |
|--------------------|-------------|-------------------|-----------------------------------|-------|-------|
| AM 선체생산설계 | 경남대학교 | 5.23(월) ~ 7.22(금) | 9:00 ~ 18:00, 8시간/ 1일 | 20명 | 마산 |
| AM 기장생산설계 | DSME | 5.23(월) ~ 7.22(금) | | 20명 | 거제 |
| AM 선장생산설계 | 정보시스템 | 5.23(월) ~ 7.22(금) | | 20명 | |
| AM 전장생산설계 | 경남 테크노파크 | 5.23(월) ~ 7.22(금) | | 15명 | 창원 |
| SMART 3D 선장생산설계 | | 4.18(월) ~ 5.19(목) | | 4명 | |
| TTM 선체생산설계 | | 4.18(월) ~ 5.19(목) | | 4명 | |

(선정절차)



- (신청기한) 2022. 3. 14.(월) ~ 5. 20.(금)
-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LNG선박 생산설계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055-670-6627)

3

경남 연구개발 장비공동 활용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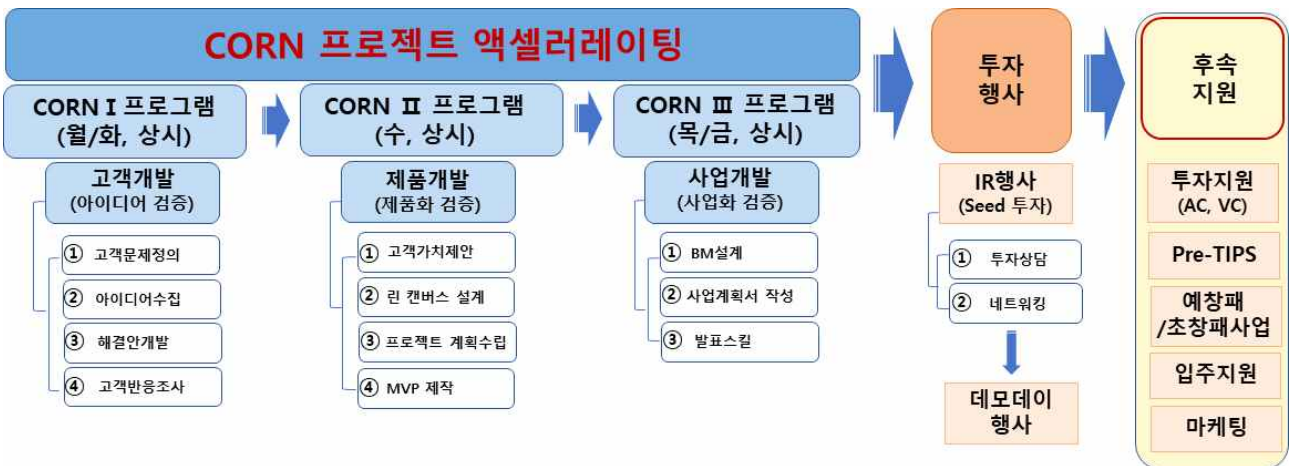
- **(사업개요)**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월 최대 1,000천원, 연 최대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국가 연구장비 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지원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세제외, 신청서 제출기한 30일 한정)

| 구분 | 일반 연구개발장비 | 특수 연구개발장비 |
|------------|---------------------------|-----------|
| 일반양산 |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 초도양산 | 수율 향상, 기술 개선 관련되면 지원가능 | 지원가능 |
| 시험생산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 개발, 시제품 제작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2022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모집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기계소재부품센터(055-259-4707)

1 2022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 (모집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혜택) 아이디어 검증, 전문가 멘토링, 투자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검증, 제품 및 사업개발 창업역량강화
 - CORN I 프로젝트 : 고객개발(아이디어 검증)
 - CORN II 프로젝트 : 제품개발(최소기능제품 확인)
 - CORN III 프로젝트 : 사업개발(사업화 검증)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운영절차)



- (세부내용) CORN 프로젝트 홈페이지 ☞ www.kcorn.kr
- (신청페이지) 2022 CORN 프로젝트 신청하기(Click)
- (문의처) 액셀러레이션본부(055-291-9314)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15기 교육생 모집공고)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혁신적이고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및 모집규모)** 예비(소상공인)창업자 / 총 30명(팀)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점포경영실습)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 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최대 3천만원 이내)
 -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 대상 신용등급 및 기타 증빙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정책자금) 창업초기 운영자금(직접대출) 최대 1억원 연계 지원
- (신청기한)** 2022. 4. 12.(화)까지
- (신청자격)**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2.3.22.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bs>) 신청
- (세부내용)** 모집관련 세부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https://www.sbiz.or.kr/nbs>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홍보 담당자 ☎055-291-9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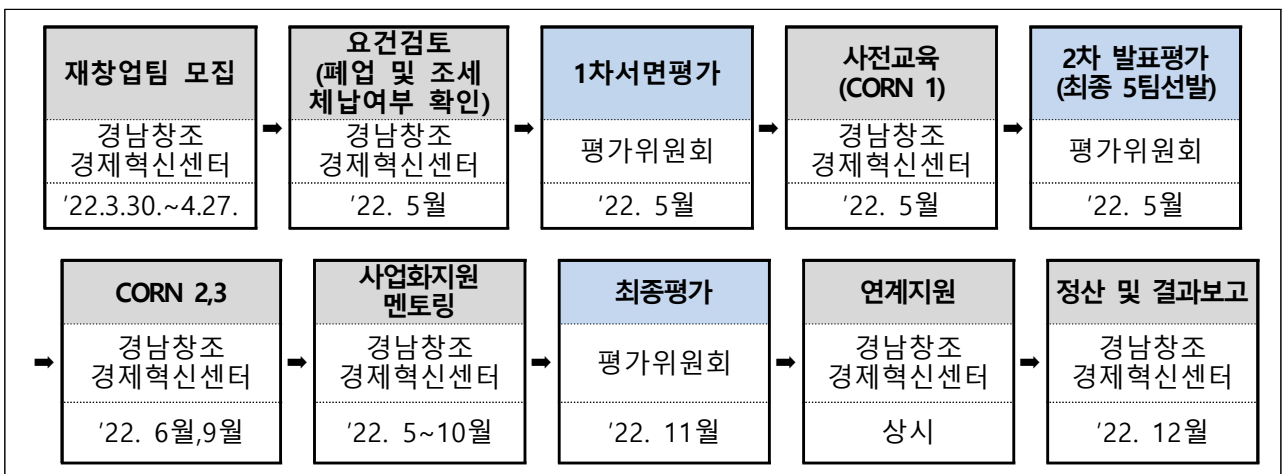
3 2022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기존사업 실패 후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의 재도전 성공 지원
- (모집대상)**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 * 예비재창업자 : 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경상남도 내 창업예정자)
 -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 재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한 창업 3년 이내(19.3.31.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모집규모)** 총 5개팀(재창업기업 3, 예비 재창업자 2)
- (지원내용)**

| 구 분 | | 지원내용 |
|------------|----------|------------------------------------|
| 사업화 (자금)지원 | | ▶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20백만원) |
|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 교육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재창업 특화교육 등 지원 |
| | 멘토링·네트워킹 | ▶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
| 인프라 지원 | | ▶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

- (신청기한)** 2022. 3. 30.(수) ~ 4. 27.(수) 18:00

- (운영절차)**



- (신청페이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공고 게시판](#)

- (문 의 처)** 창업경영지원본부(055-291-9381, 9367)

1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보증

- (사업개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경남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고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
 - ※ 정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과 중복신청 가능
- (지원규모)** 연간 1,000억 원
- (지원내용)**
 - 업체당 1천만원
 -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
 - 경남도에서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20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19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
- (지원대상)** 2021.12.27.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받은 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점~91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 특별용자’ 또는 ‘희망대출’을 지급받았거나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급받은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전국 3조 8,000억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업체당 1천만원 (대환자금 1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고정)
- (신청기한)** 2022. 1. 24.(월)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시중은행 앱으로 비대면신청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기업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도모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자자채 및 정부부처 지정-영리사업자)
 -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
- (지원규모)** 전국 450억원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보증비율 100%(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8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신청기한)** 2018. 2. 22.(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4

경상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보증

- (사업개요)** 경남지역 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조선업종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도모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Track1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 Track2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접수마감)
- (지원규모)** 연간 250억 원
- (지원내용)**
 - 같은 기업 당 재단 보증금액 최대 8억 원 이내
 - 보증기간 6년 이내(3년 일시상환 혹은 3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4%
- (신청기한)** 2021. 6. 21.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5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0~839점)
 -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구 개인CB등급 기준 4~10등급)
 - ③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수급기업 (22.1.24 개정)
 - ※ 소기업은 제외, 개인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전국 1조 원

- (지원내용)**
 - 본 건 20백만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4%

- (신청기한)** 2021. 8. 2.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1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 (사업개요)** 수출 초보기업 중점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 수출창업 및 벤처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신청자격)**
 - 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 수출실적 US\$100만 이하 기업
 - ※ 창업·벤처기업(수출실적 US\$100만 이하 기업中 정부 선정 그린뉴딜 관련 기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이 수출이행자금(선적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 후, 매입 보증) 보증한도 1억원 또는 US\$10만 이하를 활용할 경우 연대입보 제한대상 검토 후 연대보증인 면제
 - 단기수출보험·수출이행자금(선적 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 후, 매입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무료 제공(5회)
- (기타사항)** 공사 내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 가능
- (신청기한)** 2022. 12. 31.(금)까지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2**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원**

-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 (신청자격)**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이행자금 지원(선적전 보증) 무감액 기간연장
 -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및 보증료 50% 할인
 - 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무료 제공(5회)
- (신청기한)** 2022. 9. 30.(금)까지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3**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관련 무역보험 우대 지원**

- (사업개요)**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산업의 회복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우대
- (신청자격)** 자동차 부품 및 조선 기자재 제조 또는 정부 지정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
- (지원내용)**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수출이행자금 지원(선적전 보증) 무감액 기간연장 및 수출채권유동화(선적후, 매입 보증) 한도 우대
- (기타사항)** 공사 내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 가능
- (신청기한)** 2023. 1. 29.(토)까지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4 |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 (신청자격)** 수출 및 수입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국내기업
 - (대상통화) USD, JPY, EUR, CNY(범위 선물환, 옵션형은 거래불가)
 - (보험한도) 수출입실적, 기업신용도 및 실행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책정

【 환변동보험의 종류 】

| 구 분 | | 세 부 내 용 |
|------------------------|----------------------|---|
| 일반형 선물환 | 수출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
| | 원자재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
| 범위 선물환 | 수출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 단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
| 이익금 납부 의무 없는 옵션형 | 부분보장 옵션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통화당* 80원까지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 JPY는 100엔당 |
| | 완전보장 옵션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환차손 전액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5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1개의 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와의 거래 모두 담보
 - (보증대상) KED(한국기업데이터) 등급 B이상 기업 등
 - (대상거래)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180일 이내 대출
 - (보증한도) 최대 US500만(US10만 이내 책정 시 간편 심사)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증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6**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제도 운영**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자금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선정 소부장 제조, 혁신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보험계약기간(1년)내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가능
 - (보험대상) 공사 등급 D이상 제조기업
 -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계약
 - (보험한도) 수입실적, 재무자료 등 공사 내부규정 감안 산출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자신용조사나 보험사전청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액 수출건에 대한 보험 부보를 지원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수출신고직후 수출신고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보험가입
 - (보험대상) 공사등급 G이상 및 공사등급 미보유 시 KED(한국기업데이터) 등급 CCC+이상 기업 등
 -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중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된 거래
 - (보험한도) 수출신고수리 건별 최대 US\$5만(기업 최대한도 US\$10만)
 - * 기존 공사의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Plus+) 또는 다이렉트 플러스 특약을 이용하고 있는 수출자는 본 상품 이용불가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소수출 건에 대한 신속·간편한 가입방식을 통해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한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비대면가입 및 수입자 입력 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가입
 - (보험대상) 공사 등급 G이상 기업 중 직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기업
 -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거래
 - (보험한도) 개별수입자 당 최대한도 US\$10만(기업 최대 한도 US\$20만)
 - * 기존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와 중복이용 제한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9**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공사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은행 플랫폼 및 대외정보연계망 활용을 통한 보증심사 자동화
 - (지원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대상) KED(한국기업데이터) 등급 B+이상 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 및 수출실적 U\$1만 이상 U\$100만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보증한도) 5천만원(확정한도)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증취급은행 : 신한은행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4)

1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2건 이내(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
| 지식재산 창출지원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 특허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8,0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천원 이내 |
| | | 제품디자인 목업 | 6,000천원 이내 |
| | | 화상디자인 개발 | 6,000천원~9,000천원 이내 |
| | | 포장디자인 개발 | 9,000천원 이내 |
|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천원 이내 |
| | | 리뉴얼브랜드 개발 | 6,000천원 이내 |

- (신청기한) 2022. 2. 7.(월) ~ 수시접수(연중)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ripic.org/pms)
- (세부내용) 2022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7)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시설투자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정책자금(10,000억 원) 용자 및 이차보전(0.75~2.0%, 325억 원)
- **(지원내용)** 금융기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10억 원), 시설설비자금(업체당 최대 20억 원),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40억 원) 용자승인¹⁾ 및 이차보전 지원
 - 1) 금융기관의 대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는 별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용자가 불허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신청기한)**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월별 접수일정 참조
- **(신청방법)** 협약 금융기관²⁾ 및 보증기관³⁾ 전국지점으로 방문 신청
 - 2) 금융기관(15개사) : 경남, 농협, 국민, 부산, 신한, 우리, 제일, 기업, 하나, 산업, 씨티, 대구, 수협, 새마을, 신협
 - 3) 보증기관(2개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세부내용)**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기업통합지원센터(055-230-2901~3)

□ (사업개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 확대 운영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거래 선호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을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지원 및 확대 운영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사업계획)

- (입점 자격요건 완화) 농·축·수·임산물뿐 아니라 가공품, 지역특산물, 지역문화체험상품 등의 제품도 입점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완화함
 - 1차 농·축·수·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가공품 : 경상남도 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홍보·마케팅 활성화)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경남도 대표 쇼핑몰로 자리매김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
- (정기구독 서비스) 구독경제(정기주문) 카테고리 개설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자 함(구매 회차별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함)
- (이용 편의성 증대) 전용앱 출시를 통해 e경남몰의 소식을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전반적인 구매 과정에 편의성을 제공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5-230-2963)

- **(사업개요)** Digital(디지털), Network(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도내 5인 이상 사업장 및 참여청년
 - 참여기업 : 도내 소재한 5인 이상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 기업
 - 참여청년 : 2022.1.1.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모집지역)**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 지원, ②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모집 재공고 추후 예정
- **(세부내용)**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1)

4**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

- (사업개요)** 경남전입을 희망하는 타 시도 청년들과 도내 유망 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로 지역정착 지원과 청년유입 활성화
- (지원대상)** 도내 5인 이상 사업장 및 귀환청년
 - 참여기업 : 도내 소재한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벤처기업
 - 귀환청년 : 2022.1.1.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면서, 모집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타 시·도(경남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모집지역)**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 지원, ②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모집 재공고 예정(4월)
- (세부내용)**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5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 (사업개요)**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현장실습 선도기업간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습과 취업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및 고졸자
 - 현장실습 선도기업 :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현장실습 훈련시간,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 일정 규모 근로자 재직 등) 충족기업
- * 현장실습 참여기업이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학과) 3학년 학생이 수업일수 1/3범위(약3개월) 이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기업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
- 고졸자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모집지역)**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 지원, ②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모집 재공고 예정(4월)
 - (세부내용)**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일자리사업 공고\(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6**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

- (사업개요)**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 증진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50인 미만 사업장, 출자·출연기관 등
 - 노동상담 :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및 기관
(진정서 작성, 권리구제 지원 포함)
 - 소규모 노무컨설팅 : 도내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 주52시간제 컨설팅 : 도내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장
 - 노동법 교육 : 도내 소재한 노동조합, 사업장,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 (지원내용)** 도내 노동자 및 기업(기관)에 ①노동상담(진정서 작성, 권리구제 포함), ②소규모 노무컨설팅, ③주52시간제, ④노동법 교육 무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세부내용)**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신청서식\(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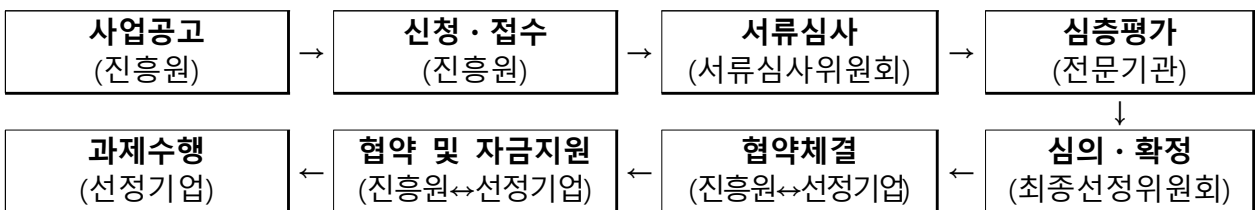
1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관내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신청자격)**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인 법인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20억이상 ~ 400억 미만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0차 개정안 기준)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내용)**

- 전용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등
- 금융기관 이자우대, 유관기관 보증지원, 컨설팅, 수출상담 지원 등

- **(지원규모)** 업체당 50백만원(기업부담금 20% 필수 매칭)

□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2. 4. 4.(월) ~ 4. 25.(월) 16: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전산등록(<https://www.gimhae-gangso.kr>) 후 원본서류 필수 제출(방문 혹은 등기우편)
- **(세부내용)** 김해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신청하기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imhae-gangso.kr>
-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55-310-9221~5)

2

2022년 셋별(G-Rising Star)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기업규모는 작으나 독자기술 및 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장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추진
- (지원대상)** 김해시 내 본점이 소재한 법인 중소기업, 매출 20억원 미만
- (지원규모)** 10개사
※ 1개사당 1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컨설팅 지원
 - 기업 경영 및 사업구조 진단, 기술컨설팅 진행 등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출원 및 인증, 디자인개발 등 기업 맞춤형 지원
- (신청기한)**
 - 사업공고 : 2022. 3. 14.(월) ~ 4. 8.(금)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 : 2022. 4. 11.(월) ~ 4. 2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www.gbia.or.kr)을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 (세부내용)** [2022년 셋별\(G-Rising Star\)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Click\)](#)
-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담당자(055-310-9222)

3 |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도전의식 고취 및 개발 제품의 조기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판로개척에 기여

- (지원대상)** 신제품의 개발·기존제품의 개선 계획이 있고, 본사 또는 공장이 김해시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김해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으로, 김해시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규모)** 4개사 내외(1사 최대 1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지원내용)**
 - 기업 신성장동력 제품 상용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제품개발비, 시험인증비, 광고홍보비 중 2개 이상 비목을 포함해 사업계획서 구성
 - * 지원 비목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 (신청기한)** 2022. 4. 20.(수) 18:00까지(예정)

- (신청방법)** 신청서류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세부내용)**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Click\)](#)

-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55-310-9224)

1 2022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말레이시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창원시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하이브리드 공동관 운영을 통한 수출성과 도출 및 내수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말레이시아 기계&자동화 전시회 2022(METALTECH&AUTOMEX)
 - 개최일정 : 2022년 06월 22일(수) ~25일(토)[4일간]
 - 국가/도시 : 말레이시아(Malaysia)/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전시품목 : 공작기계, 금속가공, 자동화 기술 기계제품 및 부품류 등
- (모집규모)** 5개사 내외
- (모집기한)** 2022. 3. 2.(수) ~ 4. 6.(수) [약 5주간]
- (지원범위)** 기업당 약 8,000천원 내외(예산범위 내)
 - 편도항공료, 체제비 기업부담
 - 참가부스 임차료, 장치비, 화물탁송료, 통역료, 편도항공료(1사1인, 일반석), 전시부스 조성비(디자인, 홍보물 등) 지원
 - 참고사항 : 기업 선 지출 후 보조금 지급(사후정산)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2)

2**2022년 인도네시아(자동차, 기계, 전자) 무역사절단 모집공고**

- (사업개요)** 창원시 관내 기업체의 내수시장 극복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대상국 확대 지원
- (사업기간)** (현지파견) 2022. 9. 20.(화) ~ 9. 25.(일) [4박6일] 예정
(온라인상담) 2022. 4. 21.(목) ~ 9. 22.(금)
- (파견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모집규모)** 창원시 소재 해당분야 중소기업체 약 10개사
※ 기업체 참석자는 임원급 이상 참석 가능
- (모집기한)** 2022. 3. 3.(목) ~ 4. 1.(금) [약 4주간]
- (참가품목)** 기계부품(산업기계, 건설기계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 (주요내용)** 사전 온라인수출상담회, 산업시찰, 현지기관 간담회, 교류협력 등
- (주최/주관)** 창원시 / 창원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민간네트워크
- (지원범위)**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사후정산(단 기관 예산초과시 기업부담금 발생)
- 상담장 임차료, 단체차량제공, 통역료, 현지 수출상담회, 간담회 비용
- 편도항공료(1사 1인 지원), 바이어 발굴알선 및 상담지원비
※ 편도항공료, 숙박비 등 현지 체재비는 업체부담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주요일정)** 공고문 참조(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3)

3

2022년 신흥해외전략시장 기술교류협력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신흥해외시장 기술교류 플랫폼 구축 및 협력 기반을 통한 바이어 매칭 및 수출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모집규모)** 25개사 내외
- (모집기한)** 2022. 3. 15.(화) ~ 4. 15.(금) [약 5주간]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70% 이내 (컨설팅 비용은 100% 지원)
- (지원내용)** 기업별 기술역량, 수출역량강화 지원, 국내·외 기술마케팅 파견 등

■ 신흥시장 기술단 파견

| 지원사업 | 세부내용 | 타깃국가 | 지원분야 |
|--------|---|-------|------------|
| 기술단 파견 | - 기술마케팅 파견비용의 70% 이내 * 기업부담 : 편도항공료, 체재비 | 태국 방콕 | 자동차부품 및 기계 |

※ 사업비 편성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개별지원 (기술역량, 수출역량강화)

| 지원사업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
| 기술역량강화 | - 수출제품 신속(Speed-up) 샘플 제작지원 | 7,000천원 | 2개사 |
| | - 기술컨설팅 지원 | 1,000천원 | 6개사 |
| 수출역량강화 | -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 5,000천원 | 2개사 |
| | - 수출애로 컨설팅 지원 | 500천원 | 8개사 |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4)

4

2022년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모집공고

- (사업개요) 독자적 해외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모집규모) 16개사 내외
- (모집기한) 2022. 3. 15.(화) ~ 4. 15.(금) [약 5주간]
- (지원범위) 기업당 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기업 현지 출장시 출장비용 지원

| 구분 | 지원범위 |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
| 1 | 기업체 자체운영 | 편도항공료 | - 진성바이어 미팅을 위한 출장 항공료 50% 이내 지원 * 기준 : 일반석, 1사 2인 이내 | 1,000천원 |
| 2 | 민간네트워크 현지운영비 | 시장조사비 | - 시장조사, 진성바이어 발굴비 * 지원한도 : 1개사 150\$~450\$ 범위 이내 | 4,000천원 |
| | | 전문통역비 | - 바이어 미팅간 전문통역 지원 | |
| | | 차량임차료 | - 현장 방문시 차량 임차료 지원 | |
| | | 상담장임차비 | - 현지 초창바이어 상담을 위한 회의실 임차비 지원 | |
| 3 | 기관운영 | 수출컨설팅 | - 수출애로 컨설팅 지원(후속사업 지원 등 필요시) * 지원한도 : 1사 500천원 이내(예산 범위내) | 500천원 |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4)

참고**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기 관 명 | 홈페이지 주소 | 대표번호 |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www.mss.go.kr/gyeongnam | 055-268-2511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www.moel.go.kr/busan | 051-860-191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 055-212-135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051-469-4680 |
| 경남신용보증재단 | www.gnsinbo.or.kr | 1644-2900 |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1544-1120 |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1588-6565 |
| (재)경남테크노파크 | www.gntp.or.kr | 1688-3360 |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 055-256-2700 |
| 한국무역보험공사 | www.ksure.or.kr | 055-286-9394 |
| 중소기업중앙회 | www.kbiz.or.kr | 055-281-2305 |
| 창원상공회의소 | changwon.korcham.net | 055-210-3000 |
| KOTRA | www.kotra.or.kr | 055-290-0602 |
| 경남지식재산센터 | www.ripc.org/changwon | 055-210-3081~5 |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www.gnepa.or.kr | 055-212-6760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www.gcaf.or.kr | 055-230-8600 |
|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gibf.or.kr | 055-310-9223 |
| 창원산업진흥원 | www.cwip.or.kr | 055-716-77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